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7. 12.

발 의 자 : 정경희 · 정찬민 · 박대출
윤재옥 · 황보승희 · 박성민
하영제 · 강민국 · 이양수
유상범 · 조수진 · 김영식
권명호 · 엄태영 · 서병수
박대수 · 조태용 · 윤희숙
이영 · 강대식 · 홍석준
박진 · 김예지 · 이만희
김미애 · 이철규 · 이달곤
최춘식 · 서정숙 · 송석준
한무경 · 김석기 · 김성원
서범수 · 윤창현 · 조명희
이헌승 · 김상훈 · 최승재
이명수 · 이종성 · 양금희
최형두 · 백종현 · 김선교
성일종 · 김도읍 · 배준영
권영세 · 전주혜 · 윤두현
배현진 · 서일준 의원
(5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투표사무원 ·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사전

투표일이나 본 투표일에 투표소·개표소에서 선거관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며, 각 인력은 공무원·교직원·은행직원 등 일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되고 있음.

이들은 선거인의 신분 확인, 투표 안내, 투표함 봉인·개함 및 집계 등 투표·개표 절차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,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적법하게 위촉된 사무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.

이와 같은 취지에서 종전 법률은 선거일 전 3일까지 위촉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하도록 하여,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공고된 성명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그러나 해당 공고 규정은 2018년 4월 6일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으며, 당시의 개정 목적이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의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. 이에 개정 전 법률의 내용과 같이 성명 공고 절차를 다시 도입하여,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·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,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7조, 제148조, 제174조 및 제261조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7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⑩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위촉한 투표사무원의 성명을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48조제4항 중 “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”를 “사전투표사무원의 성명 공고와 추천 협조”로, “제10항 및 제11항”을 “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“선거일 전 3일까지”는 “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”로 본다.

제17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개표사무원의 성명을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제261조제7항제2호사목 중 “제147조제10항”을 “제147조제11항”으로, “제174조제3항”을 “제174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) 제147조제10항 및 제1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도래하는 선거에서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사전투표사무원의 성명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) 제1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전투표기간 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47條(投票所의 設置) ① ~ ⑨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⑩ · ⑪ (생 략) 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 ~ ③ (생 략)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 · 사용협조, 설비, <u>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</u>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,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 ⑤ · ⑥ (생 략) 第174條(開票事務員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第147條(投票所의 設置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읍 · 면 ·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위촉한 투표사무원의 성명을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⑪ · ⑫ (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) 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<u>사전투표사무원의 성명 공고와 추천 협조</u> ----- ----<u>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-----</u>. 이 경우 “선거일 전 3일까지”는 “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”로 본다.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 第174條(開票事務員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구 · 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개표

③ (생 략)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~ ⑥ (생 략)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(생 략) 2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. ~ 바. (생 략) 사. 제146조의2제3항이나 제147조제10항(제1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아. (생 략) 3. ~ 6. (생 략) ⑧ ~ ⑫ (생 략)	<u>사무원의 성명을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사. -----제147조제11항----- ----- -----제174조제4항----- ----- ----- 아. (현행과 같음)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⑧ ~ ⑫ (현행과 같음)
---	---